

# 소방시설공사업

◆ 등록기준

종류	업종	자본금	기술능력	사무실
법인 / 개 인	전문	1.0 억 이상	가.주된 기술인력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<b>각 1명</b> 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) 이상 나.보조기술인력: 2명 이상	사무실
	기계분야		가. 주된 기술인력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<b>1명 이상</b> 나. 보조기술인력: <b>1명 이상</b>	
	전기분야		가. 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<b>1명 이상</b> 나. 보조기술인력: <b>1명 이상</b>	

◆ 기술인력

※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.

"보조기술인력"이란

- 1) 소방기술사,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(협회에서 발급)을 발급받은 사람
- 3)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(협회에서 발급)을 발급받은 사람

※ 기술인력 겸직 범위

1.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-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기계+전기) = 1인
2.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)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
-> 소방기술사
- 2)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->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기계+전기)
- 3)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-> 소방기술사
- 4)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->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기계 또는 전기)
- 5)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소방시설관리업 ->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기계+전기)
- 6) 일반 소방시설공사업(기계) 과 소방시설관리업 ->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기계)
- 7) 일반 소방시설공사업(전기) 과 소방시설관리업 ->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(전기)

◆ 공제조합 \* 소방산업공제조합 기준 2020년 6월 기준 : 1좌당 506,000 원

업종	자본금	예치금	기본출자좌수
소방시설공사업	1.0억 이상	20,000,000 원 이상	40좌

◆ 사무실

\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,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등 농업,임업,축산,어업 용 건물,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◆ 신규등록 소요기간

- \*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,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
- \* 평균 30~35일 이내 소요